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규정

(제정 2017.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육과정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교과 교육과정이란 「학칙」 제27조에서 정하는 정규교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설되는 강의, 학습, 활동, 특강 등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본조개정 2020.9.1.]

제3조(편성) 비교과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핵심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1. 영성인성 역량: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내면화하여 섬김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능력
2. 의사소통 역량: 현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3. 자기개발 역량: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및 훈련하고 적응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는 능력
4. 창의융합 역량: 창의적사고를 바탕으로 새롭고 가치있는 아이디어를 생산 및 구현하는 능력
5. +형협력 역량: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직·수평적 협력으로 성과를 도출하는 능력

제4조(운영) ① 교육혁신본부장은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와 교육혁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비교과 교육과정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교과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전공), 기관장, 사업단장 등은 학생역량지원센터의 핵심역량 효과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2.12.14.>

1. 비교과 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 편성표 작성
2. 비교과 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3. 비교과 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 등록
4. 비교과 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 운영
5. 비교과 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③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과(전공), 기관장, 사업단장 등은 성과분석 보고서를 학생역량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2.12.14.>

④ 교육혁신본부장은 비교과 교육과정의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①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학생역량지원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7.12.1., 2022.12.14.>

④ 국제교류원장, 학생취업부처장, 교양교육연구센터장, 카운슬링센터장, 창업지원센터장, 창의인력양성센터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과정평가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7.12.1., 2022.12.14., 2024.2.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육혁신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9.1.>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2. 비교과 교육과정 성과 분석
3.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 관리
4. 그 밖에 비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⑧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14.>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